

KWDI

해외통신

2019년 6월 1차 (2019.6.1 ~ 6.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독일 GERMANY



독일, 남녀평등지수 2018 발표 - 연방 정부 및 관련기관 관리직 여성비율 34%에 불과

채혜원 독일통신원

- 최근 발표된 독일의 '남녀평등지수(Gleichstellungsindex) 2018'에 따르면 독일 연방 정부 기관의 고위직 여성 비율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모두 고위직 여성 비율이 낮으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거의 진전이 없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 '독일 평등 지수'는 연방 통계청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매년 연방 당국의 직군별 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로 분석 대상에는 독일 연방 당국 14개 연방정부부처 외에도 연방 대통령 사무실, 연방 헌법재판소, 연방 회계감사원, 연방 총리공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 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다.
-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연방 정부와 관련 기관의 관리직 여성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분석 대상인 총 24개 연방 부처 및 기관 중 22곳에서 관리직 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높은 직위일수록 여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24개 연방 당국 중 15곳의 상급직 여성 수가 남성보다 적었다.¹⁾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상급직 그룹에 총 10,233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이 중 45%가 여성이다(2017년 46%). 특히 외교부(35%)와 국방부(37%), 연방회계감사원(38%) 등에서 기관의 상급직 여성 비율이 낮았다. 반면 다른 기관에 비해 상급직 여성 비율이 높은 곳은 경제협력개발부(55%), 문화미디어부(54%), 교육학술부(52%) 등이었다.
- 상급직보다 높은 고위직으로 가면, 여성 비율은 더 낮아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직과 지도부 그룹에 총 2,798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이 중 1/3만이 여성이다. 총 23개의 연방 기관 중 21곳에서 고위직 남성 비율보다 여성 비율이 낮았다.

참고자료

-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 <https://www.destatis.de> (검색일: 2019.6.9.)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9.5.6.), "Giffey: Größere Anstrengung zur Gleichstellung von Frauen in obersten Bundesbehörden nötig",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giffey—groessere-anstrengung-zur-gleichstellung-von-frauen-in-obersten-bundesbehoerden-noetig/136448> (검색일: 2019.6.9.)

독일 연방 기관의 전체 여성 비율 역시 2015년 이래 1.7%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전체 부서의 37%만이 여성이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국’이나 ‘과’ 등으로 세분화된 하위 부서를 이끄는 여성 비율은 25%다. 또한 기관장을 포함한 부서장 중 거의 30%가 여성이지만, 국가 비서관 중에는 16%만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2018년에는 6개 연방 기관에서만 여성이 비서직에 임명되었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총 10개 연방 기관이 작년에 비해 여성 고위직 비율을 더 낮게 만들었으며, 기관장 여성 비율도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며 “고위직 여성을 더 많이 지원해 연방 정부가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할 때이며, 연방 정부는 앞으로 남녀동등 참여 관련 법안을 통해 2025년까지 공공 부문의 관리직 남녀 비율을 같게 만들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많은 여성들이 관리 직책에서 일해야 하며 연방 정부가 양성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미래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남녀평등지수(Gleichstellungsindex)’는 공공 및 사적인 부문의 남녀 임원직 비율이 동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간 및 공공 부문 임원직 남녀동등 참여에 관한 법률(FüPoG)’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2015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더 많은 연방 기관에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함께 평등 지수를 높이고 ‘민간 및 공공 부문 임원직 남녀동등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25년까지 공공 부문의 관리직군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목표를 ‘연방 남녀평등법(Bundesgleichstellungsgesetz)’에도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 독일은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직군’을 나눠 채용한다. 크게는 고위직, 상급직, 중급직, 단순직으로 나뉘며 직군별로 다시 여러 단계로 나뉜다.

그리스 GREECE



그리스, 쌍방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 의회 통과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그리스에서는 ‘쌍방 동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강간’이라고 규정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이 6월 7일 의회를 통과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ras)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향은 아니었으나, 인권단체 및 여성단체 등의 초안 수정 노력이 이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참고자료

- Euronews (2019.6.7), “Greek government changes definition of rape after initial draft law sparks backlash”, <https://www.euronews.com/2019/06/07/greek-government-changes-definition-of-rape-after-initial-draft-law-sparks-backlash> (검색일: 2019.6.9)

초안에는 강간의 법적 정의에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할만한 ‘신체적 위협’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해자가 폭력을 가했거나, 피해자가 충분한 저항을 했는데도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강간으로 인정되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 강간에 대한 법적 해석은 훨씬 광범위해지는 동시에 유죄판결은 어려워졌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측에서 신체적 위협이나 저항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일부 강간 혐의에 있어서는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 수준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형량도 약 3년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었다.

하지만 인권단체, 여성단체 및 활동가, 고위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초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전문가들은 성폭행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얼어붙어 저항하지 못하게 되거나, 저항하면 더욱 위험해 질 것 같아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민들이 의회에 몰려 시위를 개최하고 의회 내에서도 개정안에 반대하겠다는 의원들이 많아지자 치프라스 총리측은 의회 투표를 목전에 두고 기존 형법 개정안 내 제 336조를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하며 최대 10년에 이르는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위협이 있었음을 증명하거나, 저항하지 않은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그리스 지부 한 관계자는 이번 그리스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개정을 주장해온 사회 일부뿐만 아니라 그리스 모든 여성들에게 역사적인 성취"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그리스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럽 국가들 중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 일체를 강간으로 명문화한 9번째 국가가 된다. 2011년 채택된 ‘여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철폐를 위한 이스탄불 협약(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은 신체적, 물리적 위협 여부가 아니라 쌍방 동의여부를 중점으로 두는 것으로 법적 기준이 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리스는 지난해 본 협약을 비준했다. 반면 이스탄불 협약 이후 위 내용을 국내 법적 체계에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국가는 아직 많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은 국제사회에서 계속 주목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Independent (2019.6.7),
 “Historic victory for women’: Greece introduces new definition of rape after initial proposal sparked backlash”,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greece-rape-definition-consent-legal-change-amnesty-international-a8947221.html>
 (검색일: 2019.6.9.)

- The Guardian (2019.6.7),
 “Greece U-turns over draft law redefining rape after fierce criticism”,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jun/07/greece-in-u-turn-on-law-that-criminalises-non-consensual-sex>
 (검색일: 2019.6.9.)